

의안번호	2211134
의 퇴 인	남인순 의원
회 답 일	2025.08.20
추계번호	25C347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마음건강심리·상담자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②마음건강심리·상담사 보수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101억 8,700만원(연평균 20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마음건강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 (안 제9조)	3.5	7	7	7	7	31.5	6.3
보수교육(안 제18조)	1,722	1,864	2,018	2,185	2,366	10,156	2,031
합계	1,726	1,871	2,025	2,192	2,373	10,187	2,037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자격관리원)	(제1항)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이하 “자격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항) 자격관리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9조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 2.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징계와 관련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8조 (보수교육)	(제1항)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자격관리원, 제19조에 따른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마음건강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 (자격관리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18조 (보수교육)	○	

- (안 제4조) 제정안에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이하 “자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자격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부칙에서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안 제9조)

-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¹⁾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연간 회의 개최 횟수, 회의 참석수당이 유사사례와 동일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7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고려하여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 제정안에 따라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촉직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으로 향후 5년간 총 3,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제정안의 부칙(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과 법안의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회의가 2회만 열리는 것으로 가정

1) 제4조(구성, 임기 등) ① 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청소년상담원 자격관리업무 담당본부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국장
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4. 청소년상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2]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5	7	7	7	7	31.5	6.3

주 1) 제정안의 부칙(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과 법안의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회의가 2회만 열리는 것으로 가정

2)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실제 구성, 회의 개최 횟수, 장소 임차료 등 부대경비 발생 여부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보수교육(안 제18조)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격증 보유자로 가정하며, 유사 자격증 보유자를 준용하여 추계

- 청소년상담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와 상담 관련 자격증의 보유자 수는 2023년 기준 48,471명³⁾으로, 이는 2019~2023년에 연평균 8.3%씩 증가하였음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유사 자격증 보유자수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연간 8.3%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시험 합격자도 자격증 발급 및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향후 해당 시험 합격자의 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3)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심리학회와 상담 관련 최상위 자격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현행 상담 관련 종사자 현황(누적): 2019~2023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청소년 상담사	1급	706	885	969	1,194
	2급	7,558	9,382	10,940	13,077
	소 계	7,264	10,267	11,909	14,271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920	3,099	3,252	3,424
	정신건강간호사	8,484	8,788	9,054	9,32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043	5,319	5,611	5,900
	소 계	16,447	17,206	17,917	18,645
한국심리학회 상담 관련 자격자	임상심리전문가	1,597	1,699	1,819	1,943
	상담심리사 1급	1,553	1,671	1,799	1,922
	전문상담사 1급	1,436	1,604	1,690	1,795
	전문상담사 2급	5,988	6,366	6,648	6,965
	소 계	10,574	11,340	11,956	12,625
합 계	35,285	38,813	41,782	45,541	48,471

자료: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한국심리학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마음건강심리·상담사 보수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수교육 대상자 수에 보수교육 단가를 곱하여 추계

- (대상자 수) 추계기간 동안의 마음건강심리·상담 종사자 수는 현행 상담 관련 종사자 수 48,471명(2023년 기준)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8.3%)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마음심리·상담 종사자 수의 80%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정⁴⁾
- (교육 단가)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1인당 보수 교육비 35,000원(급수별 교육과정의 평균비용)이 추계기간 중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교육 주기) 유사사례인 청소년상담사의 사례⁵⁾를 준용하여 1년마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정

[표 3] 마음건강심리·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수: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마음심리·상담 종사자 수	61,504	66,585	72,085	78,040	84,488
교육 대상자 (종사자의 80% 규모)	49,203	53,268	57,668	62,432	67,590

주: 향후 마음건강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 수와 보수교육 비율 등에 따라 추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마음건강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01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4] 마음건강심리·상담사 보수교육 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보수교육 비용	1,722	1,864	2,018	2,185	2,366	10,156	2,031

주: 향후 마음건강심리·상담사 시험 합격자 수와 보수교육 비율 등에 따라 추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내부규정」(2025.1월 개정)에 따라 병역, 질병, 해외체류, 휴직, 기타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교육 면제가 가능함

5)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추계 결과, ①마음건강심리·상담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②마음건강심리·상담사 보수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101억 8,700만원(연평균 20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마음건강심리·상담자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3.5	7	7	7	7	31.5	6.3
마음건강심리·상담사 보수교육 비용	1,722	1,864	2,018	2,185	2,366	10,156	2,031
합계	1,726	1,871	2,025	2,192	2,373	10,187	2,037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assembly.go.kr